

속 초 시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공  보

제902호 2014년 11월 21일(금)

훈 령

○ 속초시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2

회 람									
-----	--	--	--	--	--	--	--	--	--

발행 : 기 획 감 사 실 (전화 : 639-2223, FAX : 639-2106)

속초시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속초시장 이 병 선 (직인)

2014. 11. 21.

속초시 훈령 제 670 호

속초시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

속초시일상감사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 중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나.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제3조제3호가목 중 “전용”을 “이·전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라목 및 마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마. 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부 칙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개정이유

속초시일상감사 운영규정에 일부 누락되어 있는 감사 대상 업무를 그 업무 처리의 적법성·타당성을 위해 감사원 「일상감사 가이드라인」을 준용하여 확대·추가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함.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대상사업) 일상감사 대상사업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대상사업) ----- -----.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 중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1.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 가. 지방재정법령에서 정한 지방재정투융자 대상사업 중 최종결재권자의 결재에 앞서 집행부서의 장이 예방적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감사부서의 장에게 의뢰한 사항 나. 1억원 이상 민간보조사업
2. (생략)	2. (현행과 같음)
3. 예산관리 업무(다만, 주요 정책의 집행업무에 대한 일상감사를 실시한 경우는 제외한다.)	3 ----- ----- -----
가. 5천만원 이상 전용 나. 다. (생략)	가. ----- 이·전용 나. 다. (현행과 같음)
<신설> <신설>	라.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마. 기관의 주거래 은행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생략)	4. (현행과 같음)